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유 : ① 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(증권대여위험, 증권차입위험)

⑤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

□ 효력발생일 : 2022. 8. 11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2.7.24.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1. 6. 30. 기준</u>	<u>2022.6.30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2.7.24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 트	<u>2021. 7. 31. 기준</u>	<u>2022. 6. 30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 문인력]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 트	<u>2021. 7. 31. 기준</u>	<u>2022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 문인력]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 트	<u>2021. 7. 31. 기준</u>	<u>2022. 6. 30. 기준</u>


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2021. 7. 31. 기준	2022. 6. 30. 기준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3) 자산유동화증권 : (생 략) ▶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	-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3) 자산유동화증권 : (생 략) ▶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2) 동일종목투자 : 가) (생 략) 나) (생 략) (1) 생 략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 략), <u>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</u> <u>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</u> <u>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</u> <u>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</u> <u>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</u> <u>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</u> <u>용공사 또는 법시행령에</u> <u>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</u> <u>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</u> <u>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</u> <u>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</u> <u>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</u> <u>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</u>	-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2) 동일종목투자 : 가) (생 략) 나) (생 략) (1) 생 략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 략),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 용공사법에 따른 한국주 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 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

		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(3) (생략)	(3)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〈신설〉	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표준편차 : 22.24%	표준편차 : 22.44%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2022. 7. 24. 기준 2022. 6. 30. 기준
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.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신 설> [직전 회계연도 : 2020.07.25~2021.07.24] <신 설>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.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10,384,608 원입니다.</u>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7.25~2022.07.24] 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 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7.25~2022.07.24]
----------------	---	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2.7.24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2.7.24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2.7.24. 기준</u>

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<u>2021. 7. 31. 기준</u>	<u>2022. 6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<u>제 23 기(2020.12.31)</u> <u>제 22 기(2019.12.31)</u>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<u>제 23 기(2020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<u>2021. 7. 31. 기준</u>	<u>2022. 6. 30.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 업무 (생 략)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 업무 (생 략)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사명 변경	<u>KIS 채권평가주식회사</u>	<u>KIS 자산평가주식회사</u>